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91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의료기기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임사무에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췌문 별첨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3조, 제36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생략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
평가 규칙」 제3조에 따라 생략

※ 행정관리·조직운영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략

※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5.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같은 법 제33조	
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마.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	
아. 위반사실 공표	같은 법 제38조의2	
자. 청문	같은 법 제39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	

별표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신고 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같은 법 제6조의3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위 임 사 무			<별 표> 위 임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u>		보건소장	5. <u>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u>		보건소장
가. <u>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u>	「의료기기법」 제17조		가. <u>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u>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나. <u>보고와 검사 등</u>	같은 법 제32조		나. <u>보고와 검사 등</u>	같은 법 제32조	
다. <u>폐기명령 등</u>	같은 법 제34조		다. <u>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u>	같은 법 제33조	
라. <u>사용중지명령 등</u>	같은 법 제35조		라. <u>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u>	같은 법 제34조	
마. <u>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u>	같은 법 제36조		마. <u>사용중지명령 등</u>	같은 법 제35조	
바. <u>과징금부과 및 징수</u>	같은 법 제38조		바. <u>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u>	같은 법 제36조	
사. <u>청문</u>	같은 법 제39조		사. <u>과징금부과 및 징수</u>	같은 법 제38조	
아. <u>과태료 부과 및 징수</u>	같은 법 제56조		아. <u>위반사실 공표</u>	같은 법 제38조의2	
			자. <u>청문</u>	같은 법 제39조	
			차. <u>과태료 부과 및 징수</u>	같은 법 제56조	
6. ~ 22. (생 략)			6. ~ 2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신 설>			2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동 장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리”로, “제조업허가”는 “수리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리관리”로, “제조업자”는 “수리업자”로 각각 본다.

⑤ ~ ⑥ (생략)

제33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해당 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 ~ 24. (생략)

② ~ ⑤ (생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